

【사건번호 2017-004】 국방부 PX 상품 관련 자료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 국방부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PX* 상품 관련 자료**
 - * 국군복지기본법 제2조 제3항 가목 “군 매점”
 - ** 상품명, 납품업체명,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시중판매금액 대비 할인율, 판매수량, 매출액
- 데이터 신청 목적
 - 국군 장병의 가족 및 지인들이 편지, 사진, PX 상품교환권을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
- 제공거부사유
 - PX 상품 정보는 납품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제공이 불가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신청인은 민간에서 국군장병들에게 편지, 위문품, 기프티콘 등을 보낼 수 있는 앱 서비스 개발을 위해 PX 상품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납품업체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됨
- PX에서 판매하는 상품명, 판매가격, 규격, 납품업체 등은 PX이용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로 납품업체의 정보이기도 하지만 PX이용자의 정보이기도 하며, 군인들이 어떠한 양질의 식품을 먹고 있는지 가족, 친지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PX상품의 시중가격 대비 할인율, 판매수량 등도 군인들이 어떠한 상품을 좋아하고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하고 있는지 등 군의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나. 피신청인

- PX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납품업체의 것으로 국방부는 이를 위탁판매 할 뿐이며, 상품에 관한 정보 역시 납품업체의 영업자료이므로 공개를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함
- 납품업체는 시중판매금액 대비 할인율 등의 정보로 선정하며, 매년 판매 실적에 따라 70%만 재계약하고 있어, 신청인이 요청한 할인율 및 판매 실적 등의 데이터는 납품업체의 계약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임
- 또한 상품의 판매가격은 시중판매금액 대비 최대 40% 가까이 할인되는 등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판매가가 공개되면 소비자들 사이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해당 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제공이 어려움

3. 사실조사

가. 이 사건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

- 국방부(국군복지단)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 및 국군복지단령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군 매점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 군 매점은 외부 업체의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판매 대금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해당 업체에 지급
 - 납품업체 선정은 정기선정(연 1회), 품목대체(수시)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기선정의 경우 매년 판매실적에 따라 하위 30%를 해약하고 신규 업체를 선정(국군복지단, '17년 국군복지단 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 공고)
 - 납품업체는 시중에서 3개월 이상 유통실적이 있는 품목을 시중가격 대비 저가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할인율 10% 초과 필수), 「서류심사/심의위원 평가

30% + 판매가 할인율 70%」 합산결과 획득한 점수가 높은 품목 순으로 결정
(국군복지단, '17년 국군복지단 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 공고)

- 국방부는 상기와 같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군 매점 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상품명, 납품업체,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기존업체의 계약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매실적정보(판매수량 및 매출), 신규업체 선정을 위한 납품정보(시중가격, 납품가격, 할인율) 등을 수집·관리하고 있음
- 국방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정보는 납품업체에게 대단히 민감한 정보이므로 국군복지단 내에서도 상이한 부서가 각각 관리하며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함
- 다만 사실조사결과 상기 정보 중 상품명, 판매가격, 상품규격(용량), 납품업체 정보는 국군복지포털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음
 - * 국군복지포털은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을 해야 내용을 볼 수 있으며, 현역(하사이상), 예비역, 군무원, 근무원, 국방공무원 등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 ※ 다만 국방부 산하기관 직원이나 일정한 범위의 일반인(체력단련장 이용 희망 일반인, 협력업체 소 통계시판 이용자, 육군협회회원)도 홈페이지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상품정보를 볼 수 있음

나. 국방부 비공개대상정보 판단 기준

- 국방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납품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비공개대상정보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사유
제9조제1항제7호	각종 용역수행 업체의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 평가결과 등	

다.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 이 사건 데이터는 국방부가 군인복지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 정의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라.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해당 여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10.23.선고 2007두1798판결), 그 공개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0.12.23.선고 2008두13101판결)

- 이 사건 데이터 항목 중 상품명 등 상품 관련 정보(상품명, 납품업체, 상품 규격(용량), 판매가격)는 납품업체의 비밀이라기보다는 상품판매 시 소비자인 군인들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인 점, 방위사업청 및 각 군이 국내에서 조달하는 군수품에 대한 계약정보 등(계약기관, 수요기관, 계약금액, 물품명, 계약업체명)이 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개방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데이터 항목 중 할인율, 판매수량 및 매출 정보와는 달리 전파성이 현저히 높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품업체의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 일반 공중이 아니라 회원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일반인 회원가입도 가능하며, 회원 가입 시 가입 대상 여부를 묻거나 심사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누구나 가입 후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 관리되고 있다 할 것임

- 그러나 이 사건 데이터 항목 중 할인율, 판매수량 및 매출 정보는 납품업체와 국군복지단 간의 납품계약 체결 또는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정보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사업 활동에 있어서 유리하다 할 수 있으며, 국군복지단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국군복지단 내에서도 관련 직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경영·영업상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이 사건 데이터는 영업비밀성 및 관리의 정도가 서로 다른 정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일괄하여 비공개대상정보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4. 조정 내용

가. 조정 결정 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 중 “상품명, 납품업체명,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나. 조정 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공해야 함
- 사실 확인 결과 이 사건 데이터 중 “상품명, 납품업체명,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정보는 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로서 PX 이용자에게 이미 노출되어 있으며 국군복지포털 등을 통해 군 외부에서도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 중 “상품명, 납품업체명,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정보는 납품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고, “할인율, 판매수량, 매출액” 정보는 경우에 따라서는 납품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제공이 어려움

5. 분쟁조정결과

- 위와 같은 조정안을 신청인은 수락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락거부하여, 최종적으로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종료됨